

##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“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시민과 상생하는 공기업”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7일

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



### 《블라인드 채용 및 유의사항 안내》

- ◆ 우리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,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
- ◆ 지원서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

### 1. 채용직종 : 기간제근로자

### 2. 채용분야

연번	채용분야	인원	임용예정일	고용기간	근무부서	비고
1	청소원(남)	1명	2023. 1. 2.	임용일 ~ '23.12.31.	망마국민체육센터	
2	운전원	1명	2023. 1. 2.	임용일 ~ '23.12.31.	환경자원사업소	

### 3. 근로조건

#### ○ 업무내용

채용 분야	업무내용	비고
청소원(남)	망마국민체육센터 내 남성전용 공간(탈의실 등), 시설 내·외부 청소 등 환경미화	
운전원	환경자원사업소 내 폐기물수집운반 차량 운전	

○ 임금 : 시급 10,380원 \*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

○ 소정근로 : 1일 8시간, 주 40시간

\* 운전원-주6일 근무, 청소원-토요일 격주 근무

\* 초과, 휴일, 야간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

- 휴일 및 휴가 :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관련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름

#### 4. 응시자격

-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,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.

구 분	결 격 사 유
결격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공단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li><li>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li><li>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<li>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<li>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</li><li>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li><li>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li><li>8.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<li>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<li>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li><li>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</li></ol></li><li>11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<li>12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</ol></li></ul>

※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(재산등록의무자)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'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' 또는 '취업승인심사'에서 '취업가능' 또는 '취업승인' 결정 가능한 사람

-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지역 제한 : 여수시(공고일 전일기준)

○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

○ 채용분야별 자격요건

채용 분야	세 부 내 용(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)	비 고
청소원(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18세 이상 남성</li> <li>월~금 : (오전조) ↔ (오후조) 교대근무 가능한 자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오전조 05:30~14:30, 오후조 12:00~21:00</li> </ul> </li> <li>토요일 격주(09:00~18:00) 근무 가능자</li> </ul>	
운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무지(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)로 자가 출퇴근 가능한자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근무지 : 전남 여수시 진달래길 310-157</li> </ul> </li> <li>만18세 이상자</li> <li>1종대형 면허 보유자</li> <li>토요일근무 가능한 자</li> </ul>	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운전 경력 보유자 우대

## 6. 전형절차 및 채용가점

○ 전형절차 : (1차) 서류심사 → (2차) 면접시험

채용절차	일정	비고
지원서 접수	2022.12.8. ~ 2022. 12. 19.	마지막 날은 18:00 접수 마감
서류전형합격자 발표	2022.12.20.	공단 홈페이지
면접시험	2022.12.22.	시험장소, 시간 : 공단 추후 공지
최종합격자 발표	2022.12.26.	공단 홈페이지
임용등록	2022.12.30. 한	
임용예정일	2023. 1. 2.	

○ 채용가점

구분	세부내용	가산율
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또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※ 증빙서류 제출 필요</li> </ul>	각 전형별 만점의 5%
사회적 배려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호대상자</li> <li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</li> <li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지원 대상자</li> <li>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가족 구성원 ※ 증빙서류 제출 필요</li> </ul>	각 전형별 만점의 5%

※ 기타가점 항목에서 2개 이상의 요인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요인 하나만을 적용하며, 법률가점 요인과 기타가점 요인은 각각 적용한다.

## 5. 지원서류 접수

- 접수기간 : 2022. 12. 8. ~ 2022. 12. 19. 17:00 까지
- 접수처 :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 
※ 주소 : (59713) 전남 여수시 문수로 106, 8층(문수동, 대홍빌딩) / 061-662-8218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등기우편(접수마감일 17:00 도착분에 한함)  
※ 접수 가능시간은 09:00~18:00(12:00~13:00 제외)이며, 토·일요일·공휴일은 접수 불가
- 지원서류 양식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([www.yumcorp.or.kr](http://www.yumcorp.or.kr))의 “채용공고”란에서 다운받아 사용
- 제출서류
  -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(지정양식) 각 1부
  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지정양식) 1부
  - ③ 주민등록초본(공고일 이후 발행분, 주소변동내역 및 병역사항 표시) 1부
  - ④ 운전경력증명서(운전원에 한함) 1부.
  - ⑤ 가점항목 증빙서류(해당자) 각 1부

## 6. 시험방법

### 가. 서류심사

- 대상자 : 응시자 전원
- 심사방법 및 합격자 결정

심사방법	합격자 결정기준
응시자격 적부 판정	적격자 전원

- 서류합격자 발표 : 2022. 12. 20. / 공단홈페이지

### 나. 면접심사

- 예정일자 : 2022. 12. 22.
- 대상자 : 서류합격자 전원

- 심사위원 : 3명
- 평정요소
  - 직원으로서 해당직무이해도(20점), 전문지식과 그 적응능력(20점)
  -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(20점), 예의, 품행 및 성실성(20점)
  - 응용력, 창의력, 의지력, 기타발전 가능성(20점)
- 심사방법 :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(20~16점), 중(15~11점), 하(10점이하)로 평정

#### 다. 최종합격자 결정

- 결정방법
  - 면접 심사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. 단, 심사 위원의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(10점이하)”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
-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

청소년(남)	운전원
① 고령자(출생 년월) ② 최근10년 여수시 장기 거주자	① 1종대형 면허 장기 보유자 ② 고령자(출생 년월)

#### 라. 예비합격자 운영
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발견, 임용 후 예비합격자 유효기간내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에 의한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예비합격자수 : 채용분야별 2명
- 예비합격자 순위 :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에 따른 고득점자
  - 동점자 발생시 ‘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기준’ 적용하여 순위 결정
- 예비합격자 명단 유효기간 : 최종합격자 임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
- 최종합격자 발표시 예비합격자 명단 및 순위 공고

## 마. 이의제기 절차

- 이의제기 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
  - 채용시험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불임양식에 작성하여 이메일 (jscha@yumcorp.or.kr) 제출 후 유선 확인 또는 방문제출
- 이의제기에 대한 검증 등 :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\* 결과 별도 통보

## 바. 최종합격자 임용

- 최종합격자는 지정된 기한 내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임용등록
-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 합격기준(공무원임용 기준)에 적합하고, 신원조사 및 성범죄 등 경력조회(경찰서, 등록기준지)결과 적격하여야 함
- 임용예정일 : 2023. 1. 1.

## 7. 기타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제한,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·누락,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, 접수여부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, 연령, 신체조건(사진포함)등 불합리한 차별(응시자격요건 관련 항목 제외)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, 응시자는 상기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·발언 하여서는 안됩니다. 만약 응시자가 상기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·발언 할 경우 각 전형 심사자가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, 면접위원의 질문이 상기 사항의 발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-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,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,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 합격기준(공무원임용 기준)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
- 본 채용계획 및 심사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단 제규정을 준용합니다.
-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금회 전형대상에서 제외하며, 이 후 공단의 채용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전형결과 적합한 인원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(반환청구서 및 반환용 우표를 첨부한 반환봉투 제출)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 됩니다.

\* 반환청구방법 :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또는 우편청구(반환청구서, 반환용 우표, 반환봉투를 우편으로 제출)

<p><b>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</b>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</p>
---

## 8. 문의사항 :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(☎ 061-662-8218)